

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률안

- 상공자원부 -

상공자원부는 지난 9월 14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률안을 작성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였다.

이에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하여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교통관련시설특별회계, 환경개선특별회계,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,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으로 재정체계를 단순화 하기로 한 바 있다.

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현재 석유사업기금, 석탄산업육성기금, 석탄산업안정기금,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, 해외자원개발기금 이상 5개 기금과 일반 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부문 사업비 및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재원을 통합, 특별회계로 단일화 하기로 하고,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률안을 작성한 것이다.

에너지 및 자원부문 5개 기금 및 재정에 의한 년간 사업비 운용규모는 '93. 예산기준으로 13,502 억원이며, 석유사업기금이 9,963억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- 지원형태는 융자 4,845억원(35.9%), 보조 4,327억원(31.4%), 투자 또는 출자 2,259억원(16.7%), 그리고 유가완충등이 2,122억원(16.0%)으로 되어 있다.

5개 기금의 92년말 자산액은 47,042억원이며, 그 중 석유사업기금의 자산은 42,755억원이고,
- 자산의 보유형태는 정부투자기관, 기업 또는 민간에 융자한 금액이 24,557억원, 석유비축자산 등 현물자산과 투자자산이 12,204억원, 그리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금이 8,670 억원이고 기타는 예금, 현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.

이번 상공자원부에 의하여 성안된 특별회계법안의 주요골자는

-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·운용하는 『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』를 설치하고

- 특별회계의 세입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 자원에 부과하는 부과금, 석탄생산부과금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이 회계에 의한 출자기관의 출자수입 등으로 하며, 특히 특별회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방카씨유 부가가치세액과 석유특별소비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- 특별회계의 세출은 에너지·자원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 대한 보조, 출연, 출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석유비축, 송유관, LNG사업, 유전개발을 비롯한 국내외자원개발사업, 집단에너지사업, 에너지 절약시설설치, 에너지절약기술개발, 신재생에너지개발·보급, 석탄산업합리화, 석탄가격안정사업 등 과거 5개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금에서 담당하던 사업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부문사업이 모두 포함된다.
- 이와 함께 특별회계제도로는 대처가 곤란한 유가완충사업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용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내에 『에너지사업기금』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5개 기금의 응자채권 등을 승계하며,
- 에너지 및 자원부문 5개기금의 폐지에 따라 5개기금의 관련근거법인 석유사업법, 석탄산업법, 에너지이용합리화법,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.

상공자원부는 오는 95년 1월 1일로 예정된 이 法의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환과 관련, 효율적인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석유사업기금 소관 석유비축시설과 비축유를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문제를 비록 석유사업기금의 출자회사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향후 법적위상 문제 등 과거 5개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지원되어 왔던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특별회계 제도에 맞도록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,

-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, 시행규칙 등도 제정할 계획이다.

이 법률안은 관계부처협의와 당정협의,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 심의, 의결로 확정이 되면 '95년도 예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에너지·자원부문 예산 및 5개 기금 현황

1. 에너지·자원부문 사업비 총괄(재정 및 기금)

- 에너지·자원부문의 연간사업비 운용규모는 '93기준 13,502억원
- 재원분담은 재정 14.4%, 5개기금 85.6%으로

- 주요 재원별로는 석유사업기금 73.8%, 석탄육성기금 9.1%, 재특 7.6%, 일반회계 6.8% 등임.

(단위 : 억원)

		석탄	석유가스	에너지 절약	국내 의 자원개발	전력	유기원총	기타	계
기 금	석유사업기금	2,790	2,569	1,663	819	-	2,122		9,963
	석탄육성기금	1,232	-	-	-	-	-		1,232
	석탄안정기금	46	-	-	-	-	-	25	71*
	에너지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	-	-	180	-	-	-		180* 72 109*
소계		4,068	2,569	1,843	856	-	2,122	97	11,555
재 정	일반회계	560	-	177	97	89	-		923
	재정투융자특별회계	719	170	30	80	25	-		(1,024)** 1,024
	소계	1,279	170	207	177	114	-		1,947
합계(%)		5,346	2,739	2,050	1,033	114	2,122	97	13,502

* 주) * 석탄안정기금,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자원개발기금은 석유사업기금 등으로 부터 전대분 제외.
전대분 포함시 각각 1,080억원, 210억원 및 350억원

** ()는 인건비·행정비 포함시 일반회계예산

○ 지원형태별 구분

(단위 : 억원)

계	용 자	보 조	투자·출자	유기원총	기 타
13,502 (100%)	4,845 (35.9%)	4,237 (31.4%)	2,259 (16.7%)	2,122 (15.7%)	40 (0.3%)

2. 에너지자원부문 5개기금 현황

- 석유사업기금이 전체 5개기금 운용규모의 86.2%, 자산규모의 90.9%로 대중을 이루고 있음.

(단위 : 억원)

기금명 (설치년월)	근거법 관리주체	재원조성	주요용도(기능)	'93운용규모 (전대금포함)	'92말 자산액 (총조성액)	
정부 관 리 기 금	석유사업 기금 ('77.12)	석유사업법 상공자원부 (석유개발공사)	• 석유수입시 정수금(1.7\$/B)	• 석유비축 • 석유개발 • 유기원총 • 에너지절약 • 기타에너지사업	9,963	42,755 (61,707)
	석탄육성 기금 ('77.10)	석탄산업법 상공자원부 (석탄공사)	• 정부출연	• 정부석탄비축 • 하계저탄용자 • 연탄공장 시설 현대화	1,232	2,943 (3,213)
	석탄안정 기금 ('87.1)	석탄산업법 석탄합리화 사업단	• 석탄생산시부과 금(100원/톤) • 정부출연 • 석탄회관수입 등	• 폐광지원 • 광원자녀학자금 • 석탄품질검사	71 (1,080)	107 (2,877)

(단위 : 억원)

	기금명 (설치년월)	근거법 관리주체	재원조성	주요용도(기능)	'93운용규모 (전대금포함)	'92말 자산액 (총조성액)
민 간 기 금	해외자원 개발기금 ('79.5)	해외자원 개발사업법 광업진흥 공사	• 정부출연	• 해외자원개발 융자(석유제외)	109 (350)	1,040 (1,040)
	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('80.10)	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관리공단		• 에너지절약사업	180 (210)	197 (211)
합계					11,555	47,042 (69,048)

주) 각 기금 모두 재원조성에 기금용자원리금 회수 포함

3. 기금 보유자산현황

- 5개기금 보유자산액은 '92말 기준 47,042억원
으로
 - 용자금 미회수잔액(장·단기 대여금)이
24,557억원(52.2%)
 - 석유비축시설·비축유, 저탄장·비축탄 등 현

- 물자산이 11,056억원(23.5%)
- 송유관공사 등에 대한 출자 및 기타 투자자산
이 1,148억원(2.4%)
- 현금·예금·예탁금 등 당좌자산이 10,281억
원(21.9%)임
(재특예탁 8,670억원 포함)

(단위 : 억원)

	자산액	내 역			
		용자잔액	현물자산	출자·투자	현금·예금 등
석유사업기금	42,755	22,302	9,444	1,061	9,948
석탄육성기금	2,943	1,145	1,608		190
석탄안정기금	107	-	3	87	17
해외자원개발기금	1,040	998	-		42
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	197	112	-		85
합계 (%)	47,042 (100%)	24,557 (52.2%)	11,056 (23.5%)	1,148 (2.4%)	10,281 (21.9%)

에너지 및 資源事業特別會計法(案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금을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처와 같다.

- "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"이라함은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개발·비축·생산·수송·저장·공급·절약이나 연구사업을 말한다.
- "출연"이라 함은 정부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

에너지사업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출자”라 함은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투자”라 함은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.

5. “융자”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6. “보조”라 함은 정부가 정부이외의 자가 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재정상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.

7. 에너지 · 자원관련 5개기금”이라 함은 각각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, 석탄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,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안정기금,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말한다.

8. “유가완충”이라 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회계의 관리 · 운용) ① 이 회계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 · 운용한다.

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현물자산의 관리 · 운용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회계의 재원조성)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과금을 징수 한다.

1. 석유의 수입 또는 판매시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의 수입업자 · 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

2.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석유수

입업자 또는 정제업자가 과다하게 취득한 이윤중에서 징수하는 금액

3.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

4. ① 석유 이외의 에너지자원 또는 광물자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의 수입시에 수입업자로 부터 징수하는 금액
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, 징수비율, 징수방법, 및 징수유예 ·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상공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의 기준가 차액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.

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정수대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입금의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정수한다.

⑤ 상공자원부장관은 부과금 정수대상자가 부과금 및 가산금(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을 체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, 지정한 기간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세입) ①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.

1.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부과금
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3.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, 예탁금 및 차입금

4. 정부가 이 회계를 통하여 출자한 기관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매각수입과 그 기관으로부터의 출자수입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

5. 석유사업법 제13조의 2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

6. 이 회계가 보유중인 자산의 매각 수입금
7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② 부과금 또는 수입금의 환급금은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 회계의 세입금 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. 이 경우 그 지급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세출) ①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1.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2.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보조
3.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관에의 출자 또는 출연
4. 에너지사업기금에의 출연
5. 회계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6. 이 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
-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내용과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) ① 정부는 매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.

1. 당해 회계년도 방카씨유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제조단계에서의 B-C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금액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
2.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- ②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.

제8조(예비비)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9조(일시차입금) ① 회계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

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기업회계의 원칙) ① 이 회계는 필요시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

- ①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사업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.

제12조(세출예산의 이월)

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

- ① 회계는 유가완충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융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에너지사업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이를 조성한다.
1. 基金所管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융자원리금 수입
 2.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
 3.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歲計剩餘金
 4.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
 5. 基金所管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입
 6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 -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채무보증
2.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
3. 기금이 부담하여야 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4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- ④ 제3항 제1호의 사업과 제2호의 지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기금의 운용)

- ① 기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
-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탐사사업의 실패로 해당 사업에 소요된 기금의 응자금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응자원리금 상환액과 특별부담금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④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그 운용수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유가완충을 위한 자금의 운용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유동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- ⑥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응자금상환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기금의 회계기관)**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-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원을,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담당임원 및 기금출납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- 제16조(기금의 차입)**
-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은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

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령)

이 회계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회계년도 에너지·자원관련 5개기금 소관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, 1995 회계년도 에너지·자원관련 5개기금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한다.

제2조(채권·채무의 승계)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에너지·자원관련 5개기금의 자산과 부채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.

단, 응자사업과 재정특수자특별회계에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기금이 승계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은 1994년말 현재기준의 장부가액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-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
-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석유시추선사업을 위하여 응자된 금액과 그 이자액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

①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2 제4항중 “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”을 “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17조의 2내지 제17조의 9를 삭제한다.

②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 제목과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내지 제9호를 제5호내지 제7호로 한다.

제27조 제4항의 “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의”를 “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”로 한다.

제28조 제목과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본문과 각호 및 제3항 본문을 삭제하며 제3항 각호를 제1항 각호로 한다.

제28조(석탄산업육성지원)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제28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의 “제3항 제2호의”를 “제1항 제2호외”로 하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29조 제목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, 제2항 본문과 각호 및 제3항 본문을 삭제하며 제3항 각호를 각호로 한다.

제29조(석탄산업안정지원)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정성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30조 삭제한다.

제31조 제1항중 “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”을 “제29조 각호의 사업”으로 한다.

제33조중 “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와 제2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,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”을 “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2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,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”으로 한다.

제38조 제1항 및 제2항중 “조성사업비의”를 삭제한다.

제39조의 3 제1항중 “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에서”를 삭제한다.

제44조 제4호중 “제28조 제4항의 규정”을 “제28조 제2항의 규정”으로 한다.

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.

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“제51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”을 삭제한다.

제51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다.

제69조 각호중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71조 제목중 “기금의 운용과” 및 동조 제2항의 “기금의 운용계획과”를 삭제한다.

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의 “500억원으로”를 “3조원으로”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이를 출자한다.

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 각호중 제2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·비축·운송·대여 및 판매

3. 석유비축시설의 건설·관리·운영 및 대여
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·융자 및 자재 대여
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·조사연구 및 정보제공

6.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7.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제11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의 납입 ♦

나하나쯤 하지말고 내가먼저 에너지절약